

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합105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김홍천

피고B

변론 종결2023. 4. 12.

판결 선고2023. 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 행위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7,6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피고는 C의 오빠이자 D의 아들(이하 C, D을 '피고의 가족들'이라고 한다)이다.
- 2) 피고의 가족들은 2011. 5.부터 2018. 7.까지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C의 파산 및 면책 신청 경과**

- 1) C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2018하단2897) 및 면책(2018하면2897)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C이 주장한 파산채권 총액은 약 2,339,340,000원이었고, C 명의 재산 총액은 약 16,520,000원이었다.
- 2) 수원지방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19. 4. 12. 파산을 선고하였다가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을 거쳐 2020. 6. 4. 위 파산을 폐지하고, 같은 날 면책허가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6. 23. 확정되었다.

#### **다. 원고의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금원대여 및 관련 형사판결**

- 1) 원고는 2016. 3.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가족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638,520,000원을 C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의 가족들을 고소하였다.
- 2) 수사기관은 피고의 가족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고합31)은 2021. 1. 15. '피고인들은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수익만으로는 매월 7,000,000~8,000,000원의 사채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의 가족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다만, C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의 가족들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2021노55호)은 2021. 7. 9.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C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7. 17.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며, D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도 2021. 9. 7.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D의 피고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라고 한다) 사용**

D은 피고로부터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

#### 마.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 행위(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라고 한다)

C은 2016. 6. 21.부터 2020. 4. 13.까지 피고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2 생략)(이하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고 한다)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87,650,080원을 송금하였다<sup>1)</sup>.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쟁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므로, 이들이 채무자<sup>2)</sup>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인 피고의 가족들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C이 증여 성격으로 직접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하였던 바(D도 직접 내지 I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여 행위를 하였다), C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의사를 갖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가사 C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등의 성격이 피고의 대여에 관한 변제 성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C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로 받은 287,650,0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 특히 D의 요청에 따라 수년간 금원을 대여하였고, C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의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2) 또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7623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 및 그 관련자 13) 에게 합계 832,415,000원(= 아래 459,920,000원 + 181,975,000원 + 190,52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890,023,602원(= 아래 451,800,000원 + 15,000,000원 + 241,8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을 사용하여 2015. 1. 2.부터 2018. 6. 17.까지 C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59,92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451,800,000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거래차액: 피고가 C에게 8,120,000원 더 지급함).

② 피고는 본인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사용하여 2017. 10. 31. C의 배우자 K 명의의 계좌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③ 피고는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을 사용하여 2018. 6. 28.부터 2020. 12. 12.까지 D이 사용한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로 합계 181,975,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181,403,602원4) 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거래차액: 피고가 D에게 571,398원을 더 지급함).

④ 한편 D은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를 사용하여 2018. 6. 26.부터 2021. 1. 7.까지 I 명의 계좌로 합계 909,669,788원을 지급하고, 합계 132,542,500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거래차액: D이 I에게 777,127,288원 더 지급함).

⑤ 피고도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을 사용하여 2019. 5. 20.부터 2021. 4. 30.까지 I 명의 계좌로 합계 190,52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241,820,000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거래차액: 피고가 I으로부터 51,300,000원 더 지급받음).

2)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의 성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 C의 배우자 K, I에게 각 지급한 금원보다 57,608,602원(= 위 890,023,602원 - 위 832,415,00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 C이 파산 및 면책 신청 등 전·후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의 성격이 증여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들에게 먼저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C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도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시작한 때는 2016. 6. 21.이고, 피고는 그 보다 앞선 2015. 1. 2.부터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C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지급 행위를 시작한 때도 2015. 1. 11.로서, 피고가 C에게 먼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은 변함 없다).

② D이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는 2018. 6. 28.이고, I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도 2019. 5. 31.이나, 피고가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D 내지 I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모두 앞선다.

③ 피고가 피고의 가족 등(C의 배우자 K, I 포함)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57,608,602원 더 많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가 피고의 가족 등에게 합계 660,947,000원(= C 명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459,920,000원 + D이 사용한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로 지급한 합계 181,975,000원 + I 계좌로 지급한 합계 190,5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④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660,947,000원을 주로 대출에 의하여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출 및 상환 내역 전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대출처의 자료보관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대출 및 상환 내역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부 대출 및 상환내역(을 제4, 5호증)은 실제 제출하였고, 여기에 피고가 급여생활자인 사정, 위와 같이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먼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정 등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대출 등 외부 차입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피고의 가족 등에게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⑤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660,947,000원이 대출로 조달한 원금이라고 볼 경우, 위와 같이 피고가 피고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인 57,608,602원은 위 660,947,000원에 대한 연 이율 8.7%(= 57,608,602원 / 660,947,000원 \* 100,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짜리 대출의 1년분 이자 상당액에 불과5) 한바,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연 이율 7~15%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피고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대출원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상과 같이 피고는 피고의 가족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가족 등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변제는 설령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가 위 원칙을 뒤집는 예외, 즉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의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에서 관계인이 조사한 결과에 포함된 C 명의 각 계좌의 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C은 피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반복 거래를 지속해 왔고, 이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E'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또한 위 C 명의 각 계좌의 내역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2015. 1. 11.부터 2018. 5. 30.까지 변제한 금원은 위와 같이 451,800,000원에 이르나 이는 3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124회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 것이고, C이 피고에게 매번 변제한 금액과 C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번 변제한 금액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엿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보다 피고에 대한 변제액이 적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③ 만약 C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무렵 가족인 피고에게만 집중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통모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C은 2015. 1.경부터 피고에게 많게는 매월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여금 채무를 분할 변제한 다음 다시 추가 대여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④ 나아가 피고가 그 명의 각 계좌로 C과 거래한 내역(을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C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일에 근접한 2018. 1. 이후로 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78,300,000원에 그치는 반면, 같은 시기 C에게 대여한 금액은 101,350,000원에 달할 뿐 아니라, 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보다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다시 대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C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일에 가까워지자 C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채무만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변제능력을 사실상 잃은 C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대여하였고, C은 이를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각종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결국 피고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고 이익을 준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위 C 명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8. 1. 이전에도 피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이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된 사실도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나광윤

판사김명수

별지

1) 원고는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중 ① 2016. 6. 21.부터 2018. 5. 30.까지의 총 73회 합계 286,650,080원 부분 근거는 G조합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인 '을 제1호증'이고, ② 나머지 2020. 4. 13. 1,000,000원 부분 근거는 H단체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인 '갑 제14호증'이라고 나누어 주장하였으나, H단체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에 피고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바, 결국 C이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전부 피고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채무자'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공통적으로 피고 가족들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지 않고 단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채무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쟁점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3) 원고는 2022. 3. 9.자 준비서면에서 'D이 J로 하여금 피고에게 합계 약 92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 중 J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든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위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의 실사용자가 D임을 인정하고 있어 J가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로 지급한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J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가족들 관련자 부분에서 J에 관한 거래내역은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여 계좌로부터 합계 221,403,602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여 I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을 제7호증),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나머지 141,975,000원(= 221,403,602원 ~ 40,000,000원) 중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상 L 및 M에 대한 보험료로 기록된 4,881,718원도 피고가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도 D이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하여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5) 피고가 피고의 가족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기간은 위 2.의 다. 1)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 2.부터 2021. 4. 30.까지 약 6.3년(= 2,311일 / 365일)에 이르는 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연 이율은 1.3%로 더 낮아진다.